

건축사법

[시행 2018.4.17.] [법률 제15595호, 2018.4.17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18년 4월 17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

◎ 법률 제15595호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"취소"를 "취소(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